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07 발의연월일: 2020. 9. 10.

발 의 자:윤상현・이명수・박대수

이헌승・홍준표・김예지

윤영석 • 이주환 • 구자근

허종식 · 김승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하고 도서관 자료 수집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만으로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 문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유치·설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식의 빈 곤이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.

이에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·군·구(자치구의 구를 말한다)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원이 빈약한 지역의 빈곤이 미래세대에

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·군·구(자치구의 구를 말한다)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설치 등) ① (생 략)	제27조(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
	승)
<u><신 설></u>	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	제1항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
	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
	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
	군·구(자치구의 구를 말한다)
	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
	록 노력하여야 한다.
<u>②·③</u> (생 략)	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
	과 같음)